

#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09. 7. 16.

개정 : 2025.10. 22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73조에 의거 교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 개정 2013.12.19. >

**제2조(적용범위)**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는 관계법령, 정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 개정 2013.12.19 >

**제3조(징계의 종류)**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
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< 개정 2020.08.19. >

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.

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**제4조(징계의 사유)**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< 개정 2013.12.19 >

1.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
2. 금품·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
3. 성희롱·성폭력,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**제5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)** ① 교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학교법인에 둔다.

②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 개정 2025.10.22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다만,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 개정 2025.10.22. >

1.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7명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,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2명

- 가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.
- 나. 다른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.
- 다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.
- 라. 학부모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(중·고등학교의 경우로 한정한다.)
- 마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3. 특정 성(性)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4. 중·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징계의결 요구)**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행한 후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징계사유의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행하며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징계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
2. 징계의결 요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
3. 징계대상자의 이력서
4. 근무상황 등 기타 참고서류

③ 징계대상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자가 ‘위원회’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④ 이사장은 필요시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징계 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징계대상자의 출석)**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의 소속의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며, 소속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 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④ 징계대상자의 해외체재,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.

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**제8조(심문과 진술권)** ① 위원회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대상자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징계의결요구권자, 징계대상자 및 소속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**제9조(징계의결)** ① 징계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원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,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결이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 < 개정 2020.08.19. >

③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. < 개정 2022.06.24. >

**제10조 (징계의 집행)**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4의 교원징계처분사유설 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서 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 1 호 서식]

### 교원 징계의결요구서

인 적 사 항	성 명	한 글		소 속		직위(급)	
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재직기간	
	주 소						
징 계 사 유							
징계 권자 의 결 요 구 의 견							
<p>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 사 장</p> <p>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	







[별지 제 4 호 서식]

## 교원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

소 속	직 위 ( 급 )	성 명
주 문		
이 유	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	
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
년 월 일		
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 사 장 (인)		
귀 하		
참 고 :		